주간 관세무역정보 vol.2193
2026.8.31.



정부, CPTPP 가입 논의 본격 착수 "농어업 영향 살핀다"

[이주의 초점]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 'CPTPP', 세계 GDP 14.3% 차지 (4p)

[위클리뉴스]
관세청 '해외통관제도 설명회' 개최… 美·EU·日 소액면세제도 개편 등 주요국 통관제도 공유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 8월 28일 시범운영… 관세 조회·납부·환급까지 원스톱
말레이시아 원유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간 184일→45일로 단축
"K-브랜드 짝퉁 원천 차단" 지식재산처, 국가인증상표 도입 (7p)

[판례 동향]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저가신고한 것으로 봐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15p)

[품목분류 동향]
제8416호 품목분류 해설 및 경합 세번 등 쟁점사항 연구 (24p)

한국관세무역개발원



※ AI 생성 이미지

발 행 인 백형민
편 집 인 남성훈

총 괄 김민정

취 재 강보람 aorigaski@kctdi.or.kr
김성은 ray1023@kctdi.or.kr
김다솔 kds5817@kctdi.or.kr

마 케 팅 김진우 kjw@kctdi.or.kr

디 자 인 경성문화사

발 행 처 한국관세무역개발원
발 행 일 2026년 8월 31일(통권 제2193호)
I S S N 2799-7251
e-ISSN 2799-726X
등록번호 서울 다07117(2005.5.20.)
주 소 서울시 강서구 마곡중앙로 22 6층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지식사업실
홈페이지 www.kctdi.or.kr
S N S blog.naver.com/kctdi1964
www.instagram.com/kctdi_library

* 본지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는 저작물로서 무단 복제 및 배포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협의 또는 허락에 의한 경우에도 출처를 반드시 명시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본지에서 제기한 의견 등은 필자가 소속한 기관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CONTENTS

이주의 초점

04 정부, CPTPP 가입 논의 본격 착수 "농·어업 영향 살핀다"

07 Weekly News

관세행정실무해설

13 **질의응답사례**

면세점 판매용 식품류의 원산지표시

판례동향

15 **조세심판결정례**

청구인이 쟁점물품(위스키)을 저가신고한 것으로 봐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품목분류동향

24 **품목분류해설**

제8416호 해설 및 쟁점사항 연구

40 **세번 바로잡기**

전통약재 나한과(羅漢果) 분말의 HS Code

정부, CPTPP 가입 논의 본격 착수 "농·어업 영향 살핀다"

CPTPP, 세계 GDP 14.3%… 가입국 중 멕시코와는 FTA 미체결

정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 가입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와 의견 수렴에 나선다. 다만 가입을 전제로 한 것은 아니며, 경제적 효과와 산업별 영향을 분석하고 농·어업계 등 현장 의견을 수렴한 뒤 추진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8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73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CPTPP 가입 관련 향후 대응방향' 등을 논의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우리와 입장을 같이하는 중견국 간 연대를 강화하고 핵심 공급망 안정화 및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해 CPTPP 가입과 관련한 사회적 논의와 의견 수렴을 본격 착수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CPTPP 가입이 국익과 민생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지를 살펴 추진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특히 시장개방에 따른 농·어업계 영향을 분석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향후 가입을 추진할 경우 국내 보완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 CPTPP, 인도·태평양 지역 통상질서에도 영향

정부가 사회적 논의에 나선 가운데 CPTPP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통상규범 형성 과정에서 기회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8월 24일 'CPTPP 고도화와 주요국 가입 동향' 보고서를 통해 CPTPP 가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강대국 간 패권 갈등과 지정학적 위험 증대로 무역분절화는 방지하고 안정적인 경제권을 구축하고자 메가FTA(Mega FTA)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EU와 ASEAN 등은 인접국 간 기존 동맹 외에도 새로운 협력 방안을 모색 중이다.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CPTPP는 역내 무역 확대를 도모하며 인도·태평양 지역 내 공급망의 회복탄력성을 높이고 있다"며, "CPTPP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향후 기회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인도·태평양을 넘어 다른 지역과의 연대가 확대되는 과정에서 CPTPP에서 마련되는 새로운 규범이 향후 인도·태평양 지역의 통상질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현재 진행되는 논의에 한국의 입장을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 정부는 미 오바마정부가 주도한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 Trans-Pacific Partnership) 단계부터 가입 타당성을 검토하고 2022년 가입 신청 관련 공청회를 개최했으며, 2025년 9월 발표한 '미 관세협상 후속지원대책'에서도 시장 다변화 방안으로 CPTPP 가입 검토를 언급한 바 있다.

■ CPTPP, 세계 GDP의 14.3% 차지… 최종 관세철폐율 평균 98.8%

CPTPP는 2018년 12월 정식 발효된 다자간 무역협정으로, 세계은행의 2024년 자료 기준 가입국의 GDP 합계는 15조 9,117억달러로 전 세계 GDP의 14.3%를 차지한다.

CPTPP는 관세 철폐뿐 아니라 디지털 통상, 국영기업 및 공정경쟁, 노동·환경 등 광범위한 통상규범을 다룬다. 총 30개 장으로 구성돼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모든 서비스와 투자 시장을 개방하되 예외적으로 제한할 분야만 부속서에 명시하는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을 채택해 높은 수준의 시장 자유화를 달성했다.

● 최근 5년간 한국의 대CPTPP 교역 추이 ●

(단위: 억달러)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수출	1,431	1,683	1,543	1,615	1,648
수입	1,569	1,809	1,593	1,546	1,643
무역수지	△138	△126	△50	70	6

출처: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인용한 'CPTPP 2025 정량 분석 보고서(CPTPP 2025 Quantitative Analysis Report)'에 따르면 가입국의 2025년 평균 관세철폐율은 93.6%이며, 국가별 관세철폐 일정이 최종적으로 이행되면 평균 98.8%까지 높아진다. CPTPP 발효 이후 가입국 간 역내 수출은 연평균 3.2%씩 증가해 2024년 6,180억달러에 달했다.

영국이 2024년 합류하면서 현재 CPTPP 가입국은 일본·캐나다·영국·호주·멕시코 등 12개국이다. 한국은 이 가운데 멕시코를 제외한 11개국과 양자 또는 다자 FTA를 맺고 있다.

멕시코는 올해 1월 1일부터 FTA 미체결국을 대상으로 자동차·철강·가전 등에 최대 5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어, CPTPP에 가입 시 멕시코에 생산거점을 둔 국내 기업들의 관세 부담이 완화할 가능성이 크다. 멕시코의 경우 자동차와 자동차부품, 철강, 기계 등 한국의 주력 수출시장이자 북미 진출을 위한 생산거점으로 꼽힌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김성환 부연구위원은 올해 4월 '최근 멕시코의 최혜국대우 관세 인상 조치의 영향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멕시코의 관세 인상으로 중국의 교역조건이 악화되지만, 한국의 GDP 대비 교역조건 감소율은 중국의 약 3배에 이른다"고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CPTPP 가입국은 늘어나는 추세다. 2022년 8월 가입을 신청한 코스타리카는 올해 5월 가입작업반 협상이 실질적으로 타결돼 가입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또한 CPTPP 가입국들은 인도네시아와 아랍에미리트(UAE), 필리핀의 가입 신청에 대해서도 올해 6월 예비협의를 시작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기존에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들과의 FTA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평가했다.

● CPTPP 가입국과 한국의 무역협정 체결 여부 비교 ●

회원국		일본	멕시코	브루나이	호주	캐나다	칠레
무역협정	양자	×	×	×	○	○	○
	지역	RCEP	×	한·ASEAN RCEP	RCEP	×	×
회원국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페루	싱가포르	영국	베트남
무역협정	양자	○	○	○	○	○	○
	지역	한·ASEAN RCEP	RCEP	×	한·ASEAN RCEP	×	한·ASEAN RCEP

출처: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현재 CPTPP는 새로운 통상환경에 맞춰 협정을 고도화하는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 CPTPP 위원회는 첫 번째 총괄검토(General Review)를 2025년 11월 마치고 협정 개정이 필요한 분야와 개정 없이 개선할 분야를 구분해 권고사항을 제시했다. 이행 상황은 차기 CPTPP 위원회에 보고되며 올해 말까지 보고가 완료될 예정이다.

협정 개정 대상으로는 통관 행정 및 무역원활화, 국경 간 서비스무역, 금융서비스, 전자상거래 등이 포함됐다. 투자·국영기업·혁신을 비롯해 경제적 강압과 시장왜곡 관행 등에 대해서도 개선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 정부, 대외경제 네트워크 확대 강조

구윤철 부총리가 CPTPP 가입과 관련한 사회적 논의와 의견 수렴을 본격 착수하겠다고 밝혔지만, 농축수산물 시장 개방 문제가 가입의 변수로 꼽힌다. CPTPP 가입국에 농축산업 경쟁력이 높은 호주와 캐나다, 뉴질랜드 등이 포함돼 있어 가입 협상 과정에서 해당 시장 개방이 불가피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CPTPP 가입 추진 여부를 판단할 때 농업계 예상 피해를 소홀히 고려하거나 평가절하해서는 안 된다"며, "CPTPP 가입으로 농업 분야에 미치는 경제적 타당성 및 영향을 분석 중"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정부는 CPTPP 가입 검토와 함께 대외경제 네트워크 확대에도 나섰다. 재경부는 8월 27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다자 통상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중앙아시아·아프리카 등 유망 지역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해 기업의 수출·수주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오는 9월 한국에서 처음 열리는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를 계기로 핵심광물·에너지·공급망, AI·바이오, 교통·물류 및 인재양성 등을 중심으로 협력을 확대하고, 아프리카와도 AI·디지털 전환을 비롯한 경제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 김성은 기자 |

미·EU·일 소액면세제도 잇단 개편··· 수출기업, 달라진 통관환경 대비해야

관세청 '해외통관제도 설명회' 개최··· 주요국 통관제도 공유

관세청이 8월 25일 수출기업과 물류업체 관계자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5차 해외통관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주요 교역국에 파견된 관세관들이 현지 통관제도 변화와 주요 분쟁사례를 소개하고 개별 상담을 통해 기업의 통관 애로에 관해 개별 상담이 진행됐다.

올해는 미국·중국·EU·일본·태국·인도·베트남·인도네시아 등 8개국 관세관이 참여해 최근 각국의 수입규제 강화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관세행정 개혁 등 변화하는 통관환경을 소개했다. 이날 특히 이목을 끈 것은 주요국의 소액 수입물품 면세제도 개편이었다.

미국은 지난해 8월 29일부터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800달러 이하 수입품에 적용하던 소액면세를 중단했다. 백악관은 2025년 7월 30일 행정명령 제14324호를 통해 1930년 관세법 제321조에 근거한 소액면세 적용을 국가·원산지·운송방식 등에 관계없이 중단한 데 이어, 법적 근거도 없애기로 했다. 주 미국 대한민국 대사관의 조광선 관세관은 "올해 6월 발표된 연방관보에 따라 2027년 7월 1일부터는 법률에 따른 영구 폐지로 전환한다"고 설명했다.

● 미·EU·일 소액면세제도 개편 ●

주요국	소액 수입물품 면세제도 개편 주요 내용
미국	2025.8.29. 800달러 이하 수입품에 적용되던 소액면세 폐지 및 법적 근거 삭제하며 영구 폐지
EU	2026.7.1. 150유로 이하 역외 수입품 관세 면제 폐지 2028.7.1.까지 품목(HS Code 6단위)별 3유로 정액관세 부과
일본	2028.4.1. 1만엔 이하(세금 제외) 통신판매 소비세 부과 대상

EU 역시 급증하는 전자상거래 소액화물에 대응해 면세제도를 개편했다. EU 이사회와 집행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7월 1일부터 역외에서 들어오는 150유로 이하 소액화물의 관세 면제는 폐지되고, 품목당 3유로의 정액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이 조치는 새로운 EU 관세체계가 적용되는 2028년 7월 1일까지 운영된다. 3유로는 소포 1건당이 아닌 HS Code(6단위)별로 부과된다. 하나의 소포에 서로 다른 품목번호의 물품이 들어 있다면 각 품목별로 3유로가 부과된다.

EU가 소액면세 개편에 속도를 내는 배경에는 전자상거래 물량 급증과 제품 안전 문제가 있다. EU 집행위원회에 따르면 2025년 EU로 들어온 150유로 이하 저가 수입물품은 약 59억개로 전년보다 26% 증가했으며, 전체 수입물품의 약 98%를 차지했다.

일본도 국경 간 전자상거래 확대에 맞춰 2028년 4월 1일부터 해외 사업자가 통신판매 방식으로 일본 소비자에게 판매·배송하는 물품 가운데 개별 물품 가격이 세전 1만엔 이하인 거래를

일본 국내에서 이뤄진 거래로 보고 소비세 과세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소액면세제도 외에도 인도의 품목분류 분쟁, 태국의 식품·화장품 통관 유의사항, 인도네시아 수출 시 주요 유의사항, 홍콩의 지식재산권 세관 신고제도 등이 소개됐다.

| 김성은 기자 |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 8월 28일 시범운영··· 관세 조회·납부·환급까지 원스톱

해외 직구 때 개인통관고유부호와 함께 거래 건별로 발급된 일회용 인증번호를 입력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관세 조회·납부와 통관이력 확인 등을 한곳에서 처리하는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도 운영된다. 관세청은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을 막고 해외 직구 물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구축한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을 8월 28일부터 시범 운영한다. 해당 플랫폼은 서비스 안정화 작업을 거쳐 올해 안에 정식 개통할 예정이다.

● 전자상거래 물품 구매 시 개인정보 보호 강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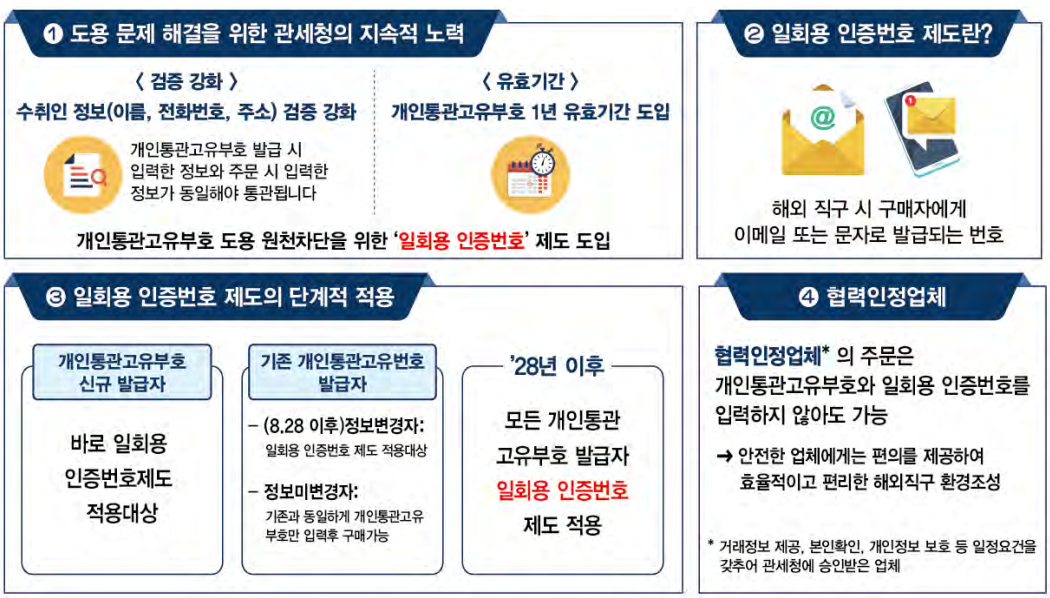

출처: 관세청

일회용 인증번호는 해외 직구 거래마다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로 발송된다. 이용자는 상품 주문 때 개인통관고유부호와 인증번호를 함께 입력해야 한다.

다만 관세청이 인정한 본인확인 체계를 갖춘 온라인쇼핑몰에서는 개인통관고유부호와 일회

용 인증번호를 입력하지 않아도 된다.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새로 발급받거나 주소 등 등록정보를 변경할 경우 일회용 인증번호 제도가 즉시 적용되며, 기존 이용자는 개인통관고유부호를 갱신하기 전까지 종전처럼 개인통관고유 부호만 입력하면 된다.

전자상거래 물품에 대한 통관관리도 강화된다. 관세청은 국내외 판매·중개·배송업체를 등록·관리하고 온라인쇼핑몰 운영업체로부터 구매자 주문정보를 통관 전에 제출받는다. 전자상거래 전용 수입신고서와 통관목록도 신설한다. 세관은 이를 통해 확보한 주문·공급망 정보를 토대로 수하인이나 유통경로가 불분명한 물품을 선별해 집중 검사할 방침이다.

전용플랫폼에서는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갱신·해지뿐만 아니라 관세 조회·납부·환급, 통관 진행 상황과 이력, 일회용 인증번호를 한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세청은 "원스톱 전자상거래 통관 포털 서비스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전했다. | 김성은 기자 |

최근 수입신고된 중국산 배추는 포름알데히드 '불검출'

중국에서 배추의 신선도 유지를 위해 1군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를 사용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내에 수입되는 중국산 배추에 대한 안전성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수입신고된 중국산 배추와 국내 유통 중인 중국산 배추·배추김치·절임배추를 검사한 결과, 포름알데히드가 모두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중국의 한 농촌 지역에서 공업용이나 소독, 방부처리 등에 사용되는 1군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에 배추를 담갔다가 꺼낸 뒤 차량에 실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식약처는 중국산 배추에 대한 안전성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지난 8월 24일부터 25일까지 수입신고된 중국산 배추 8건을 대상으로 포름알데히드 검사를 실시했다. 검사 결과 8건 모두에서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되지 않았다. 식약처는 24일부터 통관단계 검사를 강화해 중국산 배추가 수입될 때마다 포름알데히드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배추김치와 절임배추도 제조업소별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검사 범위는 이미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제품까지 확대했다.

국내 유통 중인 배추김치·배추·절임배추 총 82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포름알데히드가 모두 검출되지 않았다. 중국 주재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을 통해 우리나라로 배추김치를 수출하는 중국 내 모든 제조업체(HACCP 인증업소 55개소)의 배추 구매처를 조사한 바, 논란이 된 중국의 원산지에서 생산된 배추를 사용한 업소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외에서 수입되는 배추김치의 경우 2024년 10월 이후 HACCP 인증을 받은 해외제조업소에서 생산된 제품만 수입 가능하다. 식약처는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한편 검사를 강화하는 등 안전관리를 이어갈 방침이다. | 김다솔 기자 |

말레이시아 원유 원산지증명서 발급 184일→45일로 단축

관세청이 8월 25일 말레이시아산 초경질유인 콘덴세이트의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간이 평균 184일에서 45일로 단축됐다고 전했다.

콘덴세이트는 가스전에서 나오는 부산물 원유로 석유화학제품의 필수 원료다. 말레이시아산 콘덴세이트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에는 최근 2년 기준 평균 184일이 걸렸다. 인도네시아 84일, 미국 72일, 호주 56일 등 다른 수입국과 비교해 발급기간이 길었다.

관세청에 따르면 발급이 늦어진 주요 원인은 한국 수입자와 싱가포르 중개상, 말레이시아 수출자가 참여하는 3국 간 거래구조와 수입 후 1개월이 지난 시점에 최종 가격이 확정되는 거래 특성 때문이다. 국내기업은 수입 시 관세를 우선 납부한 뒤 수개월이 지나 원산지증명서를 받아 FTA 사후적용으로 환급받을 수 있었다.

관세청은 말레이시아 무역통상산업부(MITI, Ministry Of Investment, Trade and Industry)와 실무협의를 거쳐 국내기업에는 수입 즉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것을 요청하고, 증명서 수정 요청은 품명 등 필수 기재사항에 한정하도록 했다. 초안 증명서를 받는 즉시 검토 의견을 보내도록 절차도 개선했다.

관세청은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간이 45일로 줄어들면서 종전보다 139일, 약 76% 단축됐다"며, "이로 인해 기업은 관세 환급금을 적기에 회수하고 원유 수급 일정을 보다 신속하게 확정할 수 있게 됐다"고 발표했다. | 김성은 기자 |

"K-브랜드 짝퉁 원천 차단" 지식재산처, 국가인증상표 도입

지식재산처가 해외에서 급증하는 K-브랜드 위조상품에 대응하기 위해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를 도입하고, 9월 11일까지 1차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K-상표의 해외 경쟁력과 신뢰도를 높이고 우리 기업의 위조상품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K-브랜드 정품임을 인증하는 '국가인증상표'를 도입해 전 세계 73개국에 출원·등록하고, 이를 우리 기업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가인증상표에 적용된 정품인증기술을 활용하면 해외 소비자도 휴대전화 카메라로 제품의 정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지재처는 해외 소비자가 조회한 정품확인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해 국가인증상표 위조 등 침해 정황이 의심되는 경우, 해외지식재산센터 등을 통해 현지 유통 실태와 관련 증거를 조사한다. 이후 지재처·관세청·외교부 등 관계 부처가 해당국 정부와 협력해 단속이나 수사, 세관 단계의 통관보류 등 후속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이번 사업은 해외에 제품을 수출 중인 국내법인이 참여 가능하며 기업 규모에 따라 중소기업

은 최대 1억원, 중견기업은 최대 2억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국가인증 상표를 사용하려는 해외 국가에서 상표 출원·등록을 마치고, 생산제품이 KC, HACCP 등 국내 품질인증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 K-상표 정부인증제도 ●

■ K-상표 정부인증 상표: 한국 기업의 제품임을 정부가 증명하는 상표
⇒ 정부가 권리자인 인증상표 개발(2026년 9월) 후 73개국 해외 등록 추진 예정

K-상표 정부인증 절차

해외 73개국에 국가인증상표 신청(출원)·등록	⇨	국가인증상표 사용신청 및 허락	⇨	정품인증기술 적용	⇨	정품확인결과 정보 수집	⇨	침해발생 시 정부 직접 대응
지재처		기업·지재처 등		지재처		지재처		범정부 합동

K-상표 정부인증제도 관련 자세한 사항은 지식재산보호종합포털(ip-navi.or.kr)과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홈페이지(koipa.re.kr/k-brand)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김다솔 기자 |

식약처, 해외시장 진출 요건 '의료기기 심사 MDSAP' 가이드라인 발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내 의료기기 제조업체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의료기기 3개 품목에 대한 '의료기기 단일 심사 프로그램(MDSAP, Medical Device Single Audit Program) 심사 대응 가이드라인' 3종을 제정·발간했다. 가이드라인에는 MDSAP 인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품목별 심사 기준과 대응 방법 등이 담겼다.

MDSAP는 미국, 캐나다, 일본, 호주, 브라질 등 5개국이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Good Manufacturing Practice)을 공동으로 심사하기 위해 운영하는 국제 협의체다. MDSAP 인증을 획득하면 참여 국가에서 요구하는 GMP 인증 심사를 전면 또는 일부 면제받을 수 있어 여러 국가에 의료기기를 수출하려는 업체의 인증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국내 의료기기 수출실적 등을 고려해 ▲절개·응고에 사용되는 3등급 의료기기 '범용전기수술기', ▲인체 조직 대체·재건 등에 쓰이는 4등급 의료기기 '조직수복용생체재료', ▲2등급 의료기기 '범용초음파영상진단장치' 3개 품목을 대상으로 마련됐다.

MDSAP 심사 제도 개요와 정회원국의 요구사항을 비롯해 제조공정별 심사 특성, 멸균 의료기기 심사 기준, 품질문서 양식 및 사례 등이 담겼다. 기계·기구, 재료·용품 등 의료기기의 특성에 따라 실제 심사 과정에서 준비해야 할 사항도 품목별로 제시됐다. | 김다솔 기자 |

2026년 16개 광역지자체 수출 5년만에 일제히 증가

올해 들어 전국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수출이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이 8월 28일 발표한 '2026년 광역지자체 수출 현황(제조자 소재지 기준)'에 따르면, 올해 1~7월 전국 수출액은 5,951억달러로 전년 동기보다 50.5% 증가했다. 같은 기간 모든 광역지자체의 수출이 증가한 것은 2021년 이후 5년 만이다.

● 2026년 1~7월 수출 현황 및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

구분		2025년 1~7월	2026년 1~7월	증감률(%)
전체 수출		3,954억달러	5,951억달러	50.5%↑
	반도체	890억달러	2,344억달러	163.4%↑
	반도체 외	3,064억달러	3,607억달러	17.7%↑

지역별 수출액은 경기 지역이 전년 동기보다 105.1% 증가한 1,954억달러로 가장 많았다. 충남은 130.7% 늘어난 1,163억달러로 뒤를 이었고, 울산 577억달러, 서울 455억달러, 전남광주 401억달러 순이었다. 수출 증가율은 제주(6억달러)가 280.3%로 가장 높았다.

● 2026년 1~7월 지자체 수출(억달러, 전년 동기 대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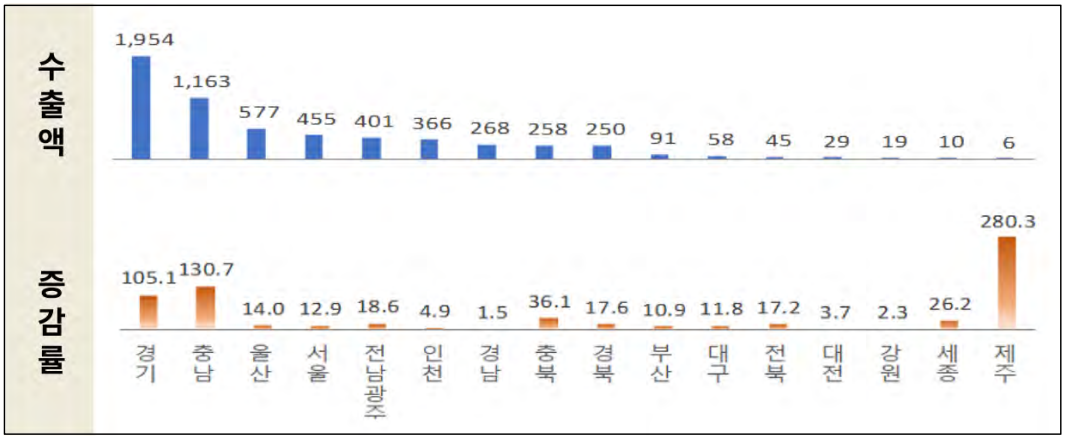

억달러, 전년 동기 대비 %(출처: 관세청)

수출 증가세는 반도체가 주도했다. 1~7월 반도체 수출은 2,344억달러로 전년 동기보다 163.4% 급증했다. 경기 지역의 반도체 수출은 235.0%, 충남은 218.5%, 충북은 53.0%, 제주는 366.3% 증가했다. 관세청은 "반도체 수출 호조와 함께 지역별 대표 수출품목이 고르게 성장하면서 수출 증가세가 전국으로 확산됐다"고 분석했다. | 김성은 기자 |

※ 주간 관세무역정보 '위클리뉴스' 코너에서는 관세무역 관련 주요 뉴스를 요약 정리해 전해드립니다. 기사 전문 및 더 자세하고 다양한 관세무역 뉴스는 **한국관세무역개발원 홈페이지(www.kctdi.or.kr) > 관세무역동향**에서 매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질의 응답 사례

본 코너는 관세청 고객지원센터에서 상담한 사례 중 주요 내용만 엄선해 제공합니다. 제공하는 사례는 법률적인 유권해석이 아니며, 민원인에게 참조의 편의상 제공하는 것이므로 법률적으로 권한 있는 해석이 필요할 경우 서면으로 별도 질의하거나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 신청 등의 절차를 거치기 바랍니다.

관세청 기획조정관 납세자보호팀 고객지원센터

원산지 분야

**면세점 판매용 식품류를 납품하고 있습니다.
물품이 판매되면 외국으로 반출되는데,
원산지표시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나요?**

문의하신 것과 같이 면세점에서 판매되고, 판매 후에는 외국으로 반출되는 물품이라면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원산지표시 면제가 가능합니다.

■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8조(원산지표시 면제) ① 세관장은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2조에 따른 원산지표시 면제대상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표시를 면제할 수 있다.
1. 판매목적이 아닌 자선목적의 기부물품
2. 우리나라로 수입되기 20년 이전에 생산된 물품
3. 보세구역에서 국내로 반입되지 않고 외국으로 반송(중계무역 및 환적 포함)되는 물품
4. 개인이 자가소비용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5. 수입자의 상호·상표 등이 인쇄되어 전시용으로만 사용하는 물품
6. 기계류 등의 본 제품과 같이 세트로 포장되어 수입되는 부분품·부속품 및 공구류

특수통관 분야

**시가를 해외 직구할 경우
관세 등 세금이 얼마나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엽궐련(시가, Cigar)의 면세통관범위(자가사용 인정기준)는 물품가격이 150달러 이하, 50개비 이하이며, 면세통관범위에 해당되도 개별소비세 및 지방세(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는 과세됩니다.

시가는 일반적으로 HS Code 제2402.10-1000호에 분류되며, 해당 호에 분류되는 경우 부과되는 세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2402호 해설서**
이 호에서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시가(cigar)·셔루트(Cheroot)·시가릴로(cigarillo)(담배를 함유한 것으로 한정한다)
이러한 물품은 원래 모양의 담배나 담배의 혼합물과 담배 대용물로 만드는데, 혼합물에서의 담배와 담배 대용물의 비율에 상관없다.

■ **시가에 대한 부과 세금**
◦ 관세: 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 보험료 등)×관세율(40%)
◦ 개별소비세: 61원/g
◦ 지방세(담배소비세): 103원/g
◦ 지방교육세: 납부해야 할 담배소비세액×43.99%
◦ 부가세: 10% 또는 부가가치세 면세규격에 해당하는 경우 면세

※ 면세 범위: 판매가격이 200원(20개비 기준) 이하인 담배 또는 「담배사업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용 담배

FTA 분야

미국으로 화학제품을 수출하려는데 미국의 비특혜 원산지 기준에 따라 최종 제품의 원산지를 대한민국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 한국 관세청에서 미리 확인받을 수 있을까요?

미국은 수출국이 아닌 원산지를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하며, 둘 이상의 국가에서 상품 또는 재료를 생산하는 경우 '비특혜 원산지 기준'에 따른 '실질적 변형'이 발생한 국가를 원산지로 판정합니다.

실질적 변형 기준이란 물품의 품명, 특성, 용도가 변화하는 경우를 원산지로 판단하며, 구체적 법령 규정이 없고 판례와 정성적 판단에 근거해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즉,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이 실질적 변형 기준에 따라 건별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한국 관세청에서는 물품의 원산지가 어떻게 판정될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해당 물품에 대해 원산지를 미리 검토하고자 하는 경우, 미국에 수입신고를 하기 전 미국 CBP의 '사전심사 제도'를 통해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전심사는 CBP의 e-Ruling 홈페이지(eruling.cbp.gov)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자세한 신청 방법은 관세청 FTA포털(www.customs.go.kr/ftaportalkor)에 게시된 'CBP e-Ruling 신청 가이드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구인이 쟁점물품(위스키)을 저가신고한 것으로 봐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결정 요지

쟁점수출자는 쟁점물품의 원산지를 입증할 수 없어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할 권한이 없고 청구인과 쟁점수출자 간에는 쟁점물품 거래에 대한 계약 등 거래관계가 없으며 한·EU FTA 원산지의정서상 일반수출자는 원산지신고서에 반드시 수기로 서명하여야 하나 이 건 원산지증명서상 서명은 이미지 파일을 반복하여 사용한 것인 등 유효한 것이라 보기 어려움.

결정번호: 조심 2025관0029(2025.10.1.)
청구인: ○○○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 개요

가. 청구법인은 2022.5.13. ○○○ 소재 A(이하 '쟁점수출자'라고 한다)로부터 수입신고번호 ○○○호로 위스키(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송품장상의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신고하였고, 통관지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3년 3월경부터 청구법인을 대상으로 범칙조사를 진행한 후, ○○○ 세관당국으로부터 확보한 쟁점물품에 대한 수출송품장을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구법인이 관세 등 제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실제 물품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한 것으로 보아, 2024.11.5. 검찰에 청구법인 등을 관세포탈죄 등으로 고발(송치)하였으나, 대전지방검찰청은 2025.2.27. 증거불충분을 사유로 불기소 결정하였다.

다. 한편,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수출송품장의 금액을 실제로 지급한 금액으로 보아 과세가격을 결정한 후, 2024.11.27. 청구법인에게 관세 ○○○원을 경정·고지(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2.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은 특별한 입증 없이 자의적으로 수출송품장상의 가격을 쟁점물품의 실제 지급금액으로 보아 무리하게 쟁점처분을 하였다.

(가) 처분청은 해외 위스키 브랜드의 국내 라이센스 수입업체로부터 저가신고 제보를 받아 약 18개월 이상 병행수입업체에 대해서 2회 압수수색하고, 관련 운송업체 등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조사하였으나, 관세포탈을 입증하기 위한 실제 구입가격(실제 단가)를 확인할 수 있는 직접적인 자료 및 저가신고에 따른 차액의 추가 지급 관련 자료를 전혀 확보하지 못해 결국 혐의를 입증하지 못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이 ○○○에 송금한 내역을 확인한 결과, 신고한 수입가격 이외에 별도 금액을 송금한 금융자료가 없는 이상 수입가격 과소신고를 인정하기 어렵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의 쟁점수출자와 한 93건의 거래 중 ○○○가 아닌 ○○○에서 선적, 수출된 단 1건에 대한 수출송품장을 입수하여, 이를 근거로 저가신고한 혐의로 입건, 검찰에 송치하고 쟁점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해당 수출송품장의 입수 경위가 불분명하고, ○○○를 통해 수입된 쟁점물품의 가격과 ○○○를 통해 수입된 동일 브랜드의 가격이 거의 같으며, 해당 건 물품대금의 별도 금액(차액)을 지급한 내역도 없어 쟁점물품이 저가로 신고되었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타당하지도 않고, 납득할 수도 없다.

(다) 또한, ○○○의 쟁점수출자는 ○○○ 창고에 장기 보관 중인 쟁점물품이 가격할인율이 높아 해외 매입가격보다 저렴하게 판매하고, 내부 방침에 따라 수출신고 시에 고가로 신고하였다고 청구법인에게 설명한바, ○○○ 수출신용장의 진정성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이에 근거한 쟁점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병행수입물품은 정식 라이센스 수입물품에 비하여 저가에 거래되므로 수출송품장상의 가격은 사실과 다르다.

(가) 병행수입물품은 라이센스 정식 수입업체의 유통망과 달리 재고정리나 특정지역 시장에 맞춰 할인판매 등을 하는 경우가 많아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제품을 확보할 수 있고, 보유 업체(재무상태 등) 및 제품(생산년도, 덤핑물량, 재고량 등)에 따라 동일 물품이라도 가격이 상이하다.

(나) 또한, 병행수입물품은 A/S, 교환, 환불 등에 어려움이 있어 가격이 저렴하다. 청구법인은 위스키 구매 당시 해외 선적 전·후 제품 상태와 수량 등을 현지 창고에서 검수하여 불량제품을 선별하고 필요시 그 자리에서 반품하고 있다. 이로 인해 병행수입제품은 품목이 다양하나 그 수량이 적고, 가격은 정식 수입가격의 10~20%에 불과하다. 병행수입물품의 가격과 정식 수입한 독과점 물품의 가격이 비슷하다면 병행수입 사업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다.

(다) 통상 병행수입업자들에 의하면, 파산한 회사의 물품이거나 마지막 처리하는 물품 등을 1~2대의 컨테이너로 수입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병행수입업자는 국내에서 판매하다가 판매가 되지 않는 물품의 처리 위험과 그 외의 다른 리스크를 감수하여야 하기에 정식으로 수입한 독과점물품과의 가격은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한다.

(라) 처분청은 라이센스 수입업체에서 정식 수입한 독과점 물품과의 가격 및 ○○○에서 입수한 진정성이 확인되지 않은 쟁점물품의 수출송품장상의 가격을 단순 비교해서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이 저가라는 의견이나, 이러한 비교는 실제에 부합하지 않는 무리한 억측이다.

(3) 쟁점물품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결정서에 비추어 보아도 쟁점처분은 위법하다.

(가) 대전지방검찰청은 2025.2.27. 쟁점물품 관련 처분청의 「관세법」 위반 고발 건에 대하여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고 불기소 결정을 하였다.

(나) 검찰은 위 불기소결정서에서 "저가신고에 의한 관세포탈사건의 경우, 구성요건이 되는 포탈세액(저가신고액)에 관하여 개별적 수입신고 사실별로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증명이 필요한데, 관세포탈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실제 구입가격(실제 단가)를 확인할 수 있는 직접적인 자료 및 저가신고에 따른 차액의 수출업체 추가 지급 관련자료를 요구하고 있다"는 판례를 중요한 판단의 근거로 제시하고, "○○○에서 입수한 수출송품장에 대하여 수입처에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이상 피의자의 진술만으로는 수입처의 고가 신고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가사 수입처가 고가신고를 했다는 사실이 입증되더라도 피의자가 실제와 다르게 저가신고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지는 않는다. 결국, 현재까지 확보한 증거자료 및 피의자의 진술만으로는 고가의 물건을 저가로 수입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증할 증거가 없다"고 수사결과를 밝히고 있다.

(다) 위와 같이 검찰은 ○○○ 수출송품장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근거로 한 쟁점처분은 부당하다. 또한, 저가신고에 의한 관세포탈죄는 다른 범죄와 달리 해당 관세를 포탈한 만큼 관세를 추징하는 것이므로 검찰이 관세포탈죄를 구성할 수 없다고 한 이상 이와 관련된 관세추징은 조세법률주의에도 명백히 위배되는 것이다.

(라) 한편 처분청은 대법원 판례(대법원 1987.10.26. 선고 87누493 판결)에 비추어 행정재판이나 민사재판은 반드시 검사의 무혐의 불기소처분 사실에 대하여 구속받는 것이 아니고, 법원은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써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기소 여부는 범죄의 구성요건 충족 여부 등에 의해 판단되는 것으로서 세법에 근거한 조세의 부과처분과는 그 기준 및 관점의 차이가 있어 검찰이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하여 곧 과세처분의 부당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청구법인 등에 대하여 불기소 결정이 있었더라도 쟁점처분의 적법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관세포탈죄의 경우는 관세포탈액이 바로 과세처분액이 되므로 이를 조세법률주의의 명확성 원칙을 고려하여 본다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바로 과세처분이 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마) 조세심판원도 “검찰의 불기소처분 등에 비추어 당초 처분청의 부족세액 판단에 그르침이 없는지 등을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하다(조심 2012관23, 2012.5.31.)”고 하였고,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사업장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하여 각종 자료를 압수하고 이를 근거로 과세처분하였으나, 검찰은 일부에 대하여 대표이사가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하여 불기소결정을 한바, 이러한 사항 등을 반영하여 실제수입가격을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하다(조심 2011관63, 2011.12.8.)”고 하였으므로 이러한 선결정례에 비추어 검찰의 불기소결정 이유를 살펴 과세처분의 타당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 세관당국으로부터 확보한 수출송품장에서 쟁점물품의 실제 가격을 확인하고, 이를 근거로 쟁점처분을 하였다.

(가) 처분청은 ○○○ 세관당국 회신 자료 및 청구법인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통해 저가신고를 확인하였다. 즉, 청구법인이 수입신고한 금액은 쟁점수출자의 수출금액(수출송품장 물품금액)과 비교하더라도 약 21% 정도로 매우 낮은 금액이다.

(나)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은 생산자의 평균 수출가격, 독점수입자의 평균 수입가격 등을 보더라도 저가로 신고된 것이 명확하다. 처분청은 쟁점물품 중 ○○○(이하 ‘B’라 한다)이 생산하는 ○○○ 위스키의 2022년 공급단가를 확보하였고, 쟁점물품의 수입단가는 생산자의 판매가격인 B의 평균 수출단가의 22.2~29.7% 수준인 것을 확인하였다.

통상적인 상거래 구조상 생산자의 판매가격은 낮은 가격이고, 이후 거래단계가 추가될 때마다 부가가치가 발생하고, 운송비 등 제반비용도 추가적으로 발생하며, 그에 따라 물품가격도 인상되기 마련이다. 그런데, 쟁점물품은 생산자로부터 판매된 후 여러 거래단계를 거쳐

청구법인이 수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격이 상승하기는커녕 오히려 생산자의 판매가격보다도 턱없이 낮은 가격인바, 이는 도저히 통상적인 상거래관행에 따른 가격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은 B와 수입·유통계약을 체결한 유한회사 C(이하 '독점수입자'라 한다)의 평균 수입단가의 25.6~26.1% 수준으로 매우 낮은 금액이다.

(2) 처분청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 세관당국으로부터 자료를 입수하였다.

(가) 쟁점처분의 근거가 된 ○○○ 세관당국의 회신자료는, 처분청이 「관세법」 제240조의6 및 「관세법 시행령」 제245조의5, 「대한민국 정부와 구주공동체간의 세관분야에서의 협력 및 상호 행정지원에 관한 협정」(Agreement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European Community on Cooperation and Mutual Administrative Assistance in Customs Matters), 「국가 간 정보 교환에 관한 사무처리 예규」에 따라 유럽연합 회원국인 ○○○ 세관당국으로부터 적법하게 입수한 자료이므로, 입수경위가 불분명하다거나 신뢰할 수 없는 자료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모두 타당한 이유가 없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수출자가 "고가로 수출신고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는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하는 아무런 근거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있고, 더욱이 쟁점수출자 스스로도 고가로 수출신고한 구체적인 이유를 밝힐 수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그 자체로도 이를 그대로 신뢰할 수 없다.

(3) 청구법인은 2024.8.21.자 a의 진술과 2024.9.6.자 a의 자술서를 통하여, ○○○ 창고에 보관 중이던 장기 재고 품목 중 오염이나 박스 훼손 등으로 가격 할인율이 높은 품목을 구입하여 다른 업체에 비해 저가로 수입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서울식품의약품안전청장(○○○ 소장)에 요청하여 받은 쟁점물품의 수입신고 당시의 사진을 살펴보면, 그 어디에도 제품의 오염이나 박스 훼손 등을 확인할 수 없었다. 또한 해당 검사소 담당자와 유선 연락을 하여 "통상 식품검사 과정에서 라벨지 오염 등이 확인되는 경우 화주에게 보수작업을 요구하고 있으나, 쟁점물품의 경우 이와 같은 보수작업을 요구한 기록이 없다"는 사실도 확인하였다.

(4) 쟁점물품은 병행수입물품이기에 매우 낮은 가격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병행수입 물품 가격보다 독점수입자의 물품 가격이 낮은 경우도 확인할 수도 있어 반드시 병행수입물품이 낮은 가격이라고 일반화할 수 없다. 더욱이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은 독점수입자의 수입가격보다 낮을 뿐만 아니라 생산자의 (수출)판매가격의 22.2~29.7% 수준이고, 국내의 타 병행수입업체의 수입가격보다도 약 25% 수준으로 낮은 가격인바, 쟁점물품이 저가로 신고되었

음이 분명하다.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대해서 “쟁점수출자가 ○○○ 창고에 보관중인 거의 폐품, 유통기간이 경과된 물품, 수출하기에는 부족한 수량 등 거의 쓸모없는 물품을 청구법인이 현지에서 구매하였기에 아주 저렴하게 수입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나, 쟁점물품은 하자 등이 있는 물품도 아니다.

(5) 검찰의 불기소(무혐의) 결정이 있었더라도, 쟁점처분의 적법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가) 행정재판이나 민사재판은 반드시 검사의 무혐의불기소처분 사실에 대하여 구속받는 것은 아니고 법원은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써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대법원 1987.10.26. 선고 87누493 판결, 같은 뜻임), 기소 여부는 범죄의 구성요건 충족 여부 등에 관한 판단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서 세법에 근거한 조세의 부과처분과는 그 기준 및 관점의 차이가 있어 검찰이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하여 곧 과세처분의 부당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바(조심 2010중1345, 2011.4.26., 같은 뜻임), 청구법인 등에 대해 검찰의 불기소결정이 있었더라도 쟁점처분의 적법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나) 대전지방검찰청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관세)은 개별 수입신고사실별 포탈세액(저가신고액)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증명이 필요함에도,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과 쟁점수출자 간 구매계약(수출계약), 차액 송금자료 등 실제 물품가격 및 포탈세액을 확인할 수 있는 직접적인 자료가 없고, 간접적인 자료만으로는 실제 물품가격 및 포탈세액이 증명된다고 보기 어렵기에 증거불충분을 사유로 혐의가 없다는 취지로 결정하였다.

(다) 검찰의 기소 여부는 범죄의 구성요건 충족 여부 등에 관한 판단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서 세법에 근거한 조세의 부과처분과는 그 기준 및 관점의 차이가 있어 검찰이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하여 곧 과세처분의 부당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에서 사실의 증명은 추호의 의혹도 없어야 한다는 자연과학적 증명이 아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험칙에 비추어 모든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어떤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이면 충분하다.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은 지도이념과 증명책임, 증명의 정도 등에서 서로 다른 원리가 적용된다(대법원 2018.4.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같은 뜻임).

(라) 검찰의 불기소 결정 내용은 청구법인이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것에 불과할 뿐, 수출송품장 등의 신빙성을 부인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처분청과 동일하게 2024.9.6.자 a의 자술서를 신뢰할 수 없어 쟁점수출자가 고가신고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고 있다. 따라서 이 건에서 ○○○ 세관당국 회신 자료인 수출송품장에서 수출신고 금액이 확인되어 경험칙이나 논리칙상 해당 금액이 쟁점물품의 실제 거래가격이라는 사실이 밝혀진

것인바, 검찰의 관세포탈 혐의 불기소 결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부족세액을 징수한 쟁점처분에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실제로 지급한 금액보다 저가신고된 것으로 보아, 수출 송품장상의 금액을 실제 지급금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2023.7.27. 청구법인에 대하여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2023.8.1.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를 소환조사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21년 11월부터 2022년 8월까지 9회에 걸쳐 위스키를 수입하면서 실제보다 저가로 신고하여 관세 ○○○원 상당을 포탈하고, 미화 ○○○달러를 수입실적이 없는 ○○○에 있는 업체에 사전수입대금으로 송금한 혐의가 있다고 보았다.

(나) 처분청은 2023.10.26.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를 소환하여 ○○○으로 송금한 금액에 대하여 조사한바, 위 송금액은 해외 선적 전·후에 제품 상태와 수량 등 검수를 하면서 소요되는 비용(여행경비, 수고비 등) 및 검사수수료로 ○○○(책임자 b)에게 송금한 것이므로 구매수수료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가격 가산요소에서 제외하였다.

(다) 처분청은 2023.9.27. ○○○ 세관당국에 쟁점물품의 수출신고 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하였고, ○○○ 세관당국은 2024.4.17. 처분청에 정보제공 회신서와 함께 쟁점수출자가 쟁점물품 수출신고 시 제출한 서류 ① MASTER B/L(No. ○○○), ② 수출송품장(No. ○○○), ③ 수출 포장명세서, ④ 기타 수출 관련 서류를 회신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해당 자료를 통해 쟁점물품의 수출신고 금액이 미화 총 ○○○달러라고 추정하였다.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3차 소환조사를 실시하여 위 수출송품장(NO. ○○○)의 물품을 쟁점수출자가 ○○○ 세관에 수출신고한 금액(미화 ○○○달러)과 청구법인이 2022.5.13. 2회에 걸쳐 수입신고하면서 신고한 금액(미화 ○○○달러)과의 차이(미화 ○○○달러)에 대하여 집중 질문하였다.

(마) 청구법인이 2024.9.6. 쟁점수출자의 담당자와 통화하여 확인한 결과, 해당 거래는 ○○

○ 창고에 장기 보관 중인 가격할인율이 높은 제품들에 관한 것으로 해외 판매가격이 매입가격보다 저렴하여 수출신고를 하면서 판매가격보다 고가로 신고한 것이고, 회사 보안 및 회계처리 내규상 서면으로 이유를 밝힐 수 없으나, 청구법인에게 보내준 송품장은 영업부서에서 작성된 것이고, 수출대금 또한 입금받은 금액과 일치한다고 하면서 해당 입금내역을 국제우편을 통해 청구법인에게 송부하였는바, 청구법인은 처분청에 이러한 자료를 수입대금 해외송금증과 같이 제출하였다.

(바) 처분청은 2024.11.5.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청구법인 등을 압수수색영장 집행 당시 적시한 혐의내용은 제외하고, ○○○ 세관당국으로부터 입수한 1건의 수출송품장을 근거로 관세포탈죄 등으로 고발(송치)한 후, 2024.11.27. 청구법인에게 쟁점처분을 하였다.

(사) B는 2023.3.17. 처분청에 전 세계에 동일한 가격으로 제품을 공급하지 않고 있으며, 제시된 정보를 기밀로 해 줄 것을 전제로 ○○○ 제품의 공급가격을 제출하였다.

(아) 쟁점물품 수입신고단가는 쟁점수출자가 ○○○ 세관당국에 수출신고한 단가의 20.8~20.9% 수준인 것으로 나타난다.

(자) 대전지방검찰청은 2025.2.27. 청구법인 등에 대한 「관세법」 위반 사건에 대하여 "증거불충분하여 혐의 없다"는 취지로 불기소 결정을 하였다.

⑵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수출자가 ○○○ 세관당국에 제출한 수출송품장상의 가격에 대하여 내부사정으로 고가로 신고한 것이라는 의견을 밝히고 있고, 처분청이 위 수출송품장 외에 이중 송품장, 외환지급내역 등 어떠한 저가신고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위 수출송품장의 가격은 생산자의 글로벌 공급가격보다 높아 위 가격을 실제 지급금액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음에도 처분청이 특별한 입증 없이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자의적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쟁점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 세관당국의 회신자료는 「관세법」 제240조의6, 「관세법 시행령」 제245조의5 및 「대한민국 정부와 구주공동체간의 세관분야에서의 협력 및 상호 행정지원에 관한 협정」 등에 따라 처분청이 적법하게 입수한 자료인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물품 중 ○○○의 수입신고 경우 수입단가가 생산자인 B가 제공한 공급가액에 비추어 볼 때 22.2~29.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B와 수입·유통계약을 체결한 유한회사 C의 평균 수입단가의 25.6~26.1% 수준으로 나타나는 점,

처분청이 서울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 요청하여 받은 쟁점물품의 수입신고 당시의 사진을 살펴보면, 쟁점물품에서 제품의 오염이나 박스 훼손 등을 확인할 수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므로 오염이나 박스 훼손 등으로 가격할인율이 높은 품목을 구입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검찰의 기소 여부는 범죄의 구성요건 충족 여부 등에 관한 판단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서 세법에 근거한 조세의 부과처분과는 그 기준 및 관점의 차이가 있어 검찰이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하여 곧 과세처분의 부당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저가신고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관세 등을 부과한 쟁점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관세법」제131조 및 제128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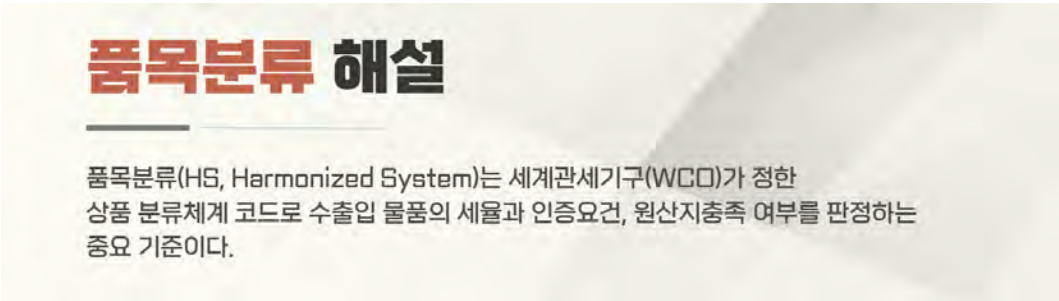

제8416호 해설 및 쟁점사항 연구

- 액체연료·잘게 부순 고체연료·기체연료를 사용하는 노용 버너(burners), 기계식 스토커(stoker)[이들(스토커)의 기계식 불판·기계식 회(ash) 배출기와 이와 유사한 기기를 포함한다

김 명 섭 | 더컨설팅그룹 THE관세연구원 원장(관세사)

1. 해설 요지

제8416호는 크게 (A) 기계식이나 자동식의 액체연료·잘게 부순 고체연료·기체연료를 사용하는 노용 버너(burners) 그룹과 (B) 기계식 스토커(stoker), 기계식 불판, 기계식 회(ash)와 잔재물(cinders)의 배출 장치 그룹으로 나눌 수 있다.

액체연료 버너는 등유, 디젤유, 나프타 등 점도가 낮은 경질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경유 버너와 C 중유, B 중유 등 점도가 매우 높은 중질유를 사용하는 중유 버너, 폐유(Waste Oil)나 바이오-오일(Bio-oil), 합성 연료 등 특수한 액체연료를 전용으로 또는 겸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버너 등이 있다.

잘게 부순 고체연료 버너에는 석유코크스 버너, 바이오매스 분말 버너, 페트로 코크스 혼소 버너(Pet Coke Co-firing Burner) 시멘트 킬른용 멀티-퓨얼 버너(Cement Kiln Multi-fuel Burner) 등이 있다.

가스버너의 연료는 가장 널리 사용되는 천연가스 외에 액화석유가스(LPG), 프로판(Propane), 부탄(Butane), 석탄가스(Coal gas), 수성가스(Water gas), 발생로가스(Producer gas), 코크스로 가스(Coke Oven gas)와 제철소, 제강소 등의 부생가스나 바이오매스를 활용한 바이오가스 등이 있다.

복합형 버너(Combination Burners)는 여러 종류의 연료를 연소시킬 수 있는 다목적 버너로 주로 가스와 오일을 모두 사용할 수 있는 듀얼-퓨얼 버너(Dual-Fuel Burner)와 액체-기체-고체 분말 연료(목재 분진, 석탄 분진 등)까지 사용할 수 있는 멀티-퓨얼 버너(Multi-Fuel Burner)가 있다.

기계식 스토커(stoker)는 기계식 불판, 기계식 재 처리기와 결합돼 바이오매스 난방용 보일러나 폐기물 소각로에서 연료나 폐기물을 공급하고 재(ash)를 처리하는 기능을 한다.

이 호로 분류되는 주요한 기기로는 중유연료 버너, 가스연료 버너, 미분탄연료버너, 가스-액체 연료 복합형 버너, 기계식 스토커, 기계식 불판(grate) 등이 있다.

2. 주요 쟁점사항

'잘게 부순 고체연료(Pulverized Solid Fuel)'는 덩어리 숯이나 알갱이 형태(Pellet)가 아니라, '공기 중에 띄워 액체·가스처럼 분사해 태울 수 있을 정도의 미세한 분말(가루)' 상태를 의미한다.

기계식 스토커(stoker)·기계식 불판·기계식 회(ash) 배출기와 이와 유사한 기기에 대해 해설서에는 석탄을 노에 공급하기 위한 기계장치로 설명하고 있으나, 현재는 바이오매스 발전 및 산업용 보일러에 연료를 공급하기 위해 사용된다.

기계식 불판(grate)은 제8416호로 분류하나, 철로 만든 범용성의 불판 봉(fire-bar)과 불판(grate)은 그 형태에 따라 제7321호(철강으로 만든 난로용 불판)·제7322호(중앙난방용 기기의 부분품인 불판)나 제7326호(벽돌을 쌓아 만든 일반구조물이나 산업용 고정 구조물들에 범용으로 쓰이는 철제의 화막 및 불판)로 각각 분류한다.

제8416호에 기계명으로 열거한 '버너, 기계식 스토커'를 '버너 기능, 기계식 스토커 기능'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며, 호의 용어를 좀 더 광범위하게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8416호의 기기는 제8404호(제8402호나 제8403호의 보일러용 부속기기), 제8424호(액체나 가루의 분사용·살포용·분무용 기기), 제8428호(그 밖의 권양용·취급용·적하용·양하용 기계), 제8474호(선별기·기계식 체·분리기·세척기·파쇄기·분쇄기·혼합기) 등과 경합이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3. 분류 체계

1) 호의 구성

제8416호는 크게 기계식이나 자동식의 액체연료·잘게 부순 고체연료·기체연료를 사용하는 노(Furnace)용 버너 그룹과 기계식 스토커(stoker), 기계식 불판, 기계식 회(ash)와 잔재물(cinders)의 배출 장치 그룹으로 나눌 수 있다.

액체연료 버너는 등유, 디젤유, 나프타 등 점도가 낮은 경질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경유 버너(Light Oil Burner)와 C 중유, B 중유 등 점도가 매우 높은 중질유를 사용하는 중유 버너(Heavy Oil Burner)로 나눌 수 있다. 최근에는 폐유(Waste Oil)나 바이오-오일(Bio-oil), 합성 연료(Synthetic Fuels) 등 특수한 액체연료를 전용으로 또는 겸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버너도 생산되고 있으며 액체연료(경유, 중유 등)와 기체연료(천연가스, LPG 등)를 모두 또는 동시에 연소할 수 있는 다연소 버너/겸용 버너(Multi-Fuel/Dual-Fuel Burner) 등도 있다.

잘게 부순 고체연료 버너에는 석유 정제 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석유코크스 버너(Petroleum Coke Burner)와 톱밥, 왕겨, 목재 펠릿을 잘게 분쇄한 목분, 짚 분말 등을 연료로 사용하는 바이오매스 분말 버너(Biomass Powder Burner), 미분탄에 석유코크스를 일정 비율(보통 10~30%)로 혼합해 함께 연소시키는 페트로 코크스 혼소 버너(Pet Coke Co-firing Burner), 시멘트 가마(Kiln)에 사용되는 특수 버너로 미분탄과 석유코크스, 폐타이어 분말, 폐플라스틱 분말, 동물성 골분 등 다양한 저급 고체연료를 한 번에 혹은 혼합해 연소시키는 시멘트 킬른용 멀티-퓨얼 버너(Cement Kiln Multi-fuel Burner) 등이 있다.

가스버너에 사용되는 연료는 생각보다 훨씬 다양하다. 가정용 및 산업용 버너에 가장 널리 사용되는 천연가스(Natural Gas) 외에 액화석유가스(LPG), 프로판(Propane), 부탄(Butane), 석탄가스(Coal gas), 수성가스(Water gas), 발생로가스(Producer gas), 코크스로가스(Coke Oven gas)와 제철소나 제강소 등의 부생가스, 바이오매스를 활용한 바이오가스가 있다. 가스버너는 통상적으로 하나의 버너가 여러 종류의 가스를 안정적으로 태울 수 있도록 설계된다. 따라서 가스버너의 연료는 단순히 한두 가지가 아닌, 용도와 상황에 맞춰 선택할 수 있는 매우 폭넓은 범위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복합형 버너는 위에서 언급한 여러 가스와 액체연료를 모두 겸용할 수 있는 멀티퓨얼 버너(Multi-fuel Burner) 등이 있다.

가) 노(Furnace)용 버너

'(A) 노(Furnace)용 버너' 그룹의 기기는 노(burners) 내에 직접 화염을 불어 넣도록 설계돼 있어 불판(grate)과 회(ash) 또는 잔재물(cinders) 배출기가 필요하지 않다. 노용 버너에는 다음과 같은 형식의 것이 있다.

(1) 중유 버너(분무기)

중유(HFO, Heavy Fuel Oil)를 고압이나 공기·증기 등을 이용해 미세 분무(연화·유화)한 뒤 연소실에서 연소시키는 기기다. 중유는 점도가 높아 직접 연소가 어렵기 때문에 예열(또는 희석)·감압·고압 펌프 공급을 통해 유량과 점도를 조절한다.

노즐에서 유류를 미세한 아주 작은 물방울 형태로 분사하면, 표면적이 커져 증발·혼합이 촉진돼 연소가 일어난다. 분무 방식에 따라 방울의 크기와 분사 패턴이 달라 연소 효율과 배기가스 특성에 영향을 준다.

주요 구성요소는 연료 탱크·히터(유동성 확보를 위한 기름의 온도 유지), 고압 펌프 및 계량밸브(연료 공급·유량 제어), 분무 노즐(atomiser), 점화장치(점화 전극, 파일롯 버너), 공기 공급장치(송풍기, 1차·2차 공기) 및 연소 제어, 안전·감시 장치(플레임 감지, 유량·압력 센서) 등이 있다.

분무 방식(atomiser)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다양한 유형이 있다.

압력 노즐 (pressure atomiser)	고압으로 연료를 직접 분사. 구조 단순, 유지보수 용이
공기 분무 노즐 (air blast/air assist)	고속 공기 흐름으로 연료를 분해 저압에서 미세 분무 우수
증기 분무 노즐 (steam atomiser)	증기로 연료를 분해·분무 분사가 균일하고 안정적이나 증기 필요
회전 노즐 (centrifugal/rotary atomiser)	원심력으로 연료를 미세화. 대형 유량에 적합
혼합형	위 방식들을 조합해 성능 최적화

중유 버너는 연료비가 적고(저가 연료), 다양한 부하 범위에서 운전할 수 있어 발전소(중유 보조 연료), 해상선박의 주·보조 보일러, 산업용 보일러, 열병합 설비 등 고출력 장비에 주로 사용된다.

(2) 미분탄버너(Pulverised Coal Burner) 기기는 석탄을 매우 미세한 분말(분쇄탄)로 만들어 공기와 혼합한 뒤 노(보일러) 내부 또는 연소실에서 분사·연소시키는 연소 장치다.

"석탄을 분쇄기(롤밀, 볼밀 등)로 미세분말화→분급기(사이클론 등)로 입도 조절→연소 공기와 함께 버너 노즐로 분사→분말탄은 공기 중에서 빠르게 연소해 열 발생→연소가스가 보일러로 이동해 증기 생성"의 사이클로 행해진다.

주요 구성요소는 연료 공급계(호퍼, 공급기), 분쇄기(롤밀, 볼밀, 해머밀 등), 분급·분진 회수 장치[사이클론, 전기집진기(ESP, Electrostatic Precipitator) 등], 노즐(분사 및 혼합), 송풍기·공기 제어장치(격화용, 완전 연소용 공기), 연소·제어 시스템(연소 공기량, 연료량, 분사 각도·압력 제어) 등으로 구성된다.

미분탄 버너는 미세 연료로 빠른 연소가 이뤄지므로 열효율이 높고, 연소 제어가 쉬워 출력 조절이 빠르다. 산업용 대형 보일러, 시멘트·제철 공정 등 고열원이 필요한 산업에 적합하나 연료 표준화(입자 크기 관리로 연소 특성 균일)를 위한 분쇄·취급 비용(에너지 소모, 설비 투자)이 많이 들고 분진 폭발 위험(분진 공기 혼합 시)과 대기오염물 배출 문제(탈황·탈질 설비 필요)가 있다.

(3) 가스버너(gas burner)는 연료가스와 공기를 제어된 비율로 혼합한 후 점화해 안정적인 화염을 생성하는 장치로 강제통풍식의 고압형의 것과 대기압의 공기를 이용한 저압형으로 나눌 수 있다. 공기와 가스는 공기공급구와 가스 분사구가 동심상(concentric)으로 배열된 관(tube)이나 병렬로 집중된 관으로 공급된다. 가정용 가스레인지나 산업용 보일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된다.

가스버너의 주요 구성요소는 가스 공급부(연료가스를 외부 공급원에서 받아들여 버너 내부로 전달), 공기 조절 장치(연소에 필요한 공기 양을 조절), 혼합실(가스와 공기를 균일하게 혼합), 점화장치(혼합된 가스-공기 혼합물에 전기 스파크나 파일럿 등으로 점화시키는 장치), 버너 헤드(혼합물이 분사돼 화염이 형성되는 최종 노즐 부분)로 구성된다.

주요 가스버너의 형태는 다음과 같다.

노즐형 버너 (Inshot Burner)	압축된 가스가 노즐을 통해 분사되면서 공기를 빨아들여 혼합하는 방식으로, 구조가 간단하고 가정용 난방로 등에 널리 쓰임.
예혼합 버너 (Premix Burner)	별도의 혼합 챔버에서 가스와 공기를 미리 완전히 혼합한 후 연소시키는 방식으로 고온의 화염을 얻을 수 있음.
강제통풍 버너 (Power Gas Burner)	전동 팬(블로워)을 이용해 공기를 강제로 주입하는 방식으로 연소 효율이 매우 높고, 산업용 대형 보일러나 열처리로에 주로 사용됨.

(4) 복합형 버너(Combination Burners)는 말 그대로 여러 종류의 연료를 연소시킬 수 있는 다목적 버너다. 오일, 가스, 그리고 때로는 목재 분진이나 석탄 분말 같은 고체 분말 연료까지 단일 또는 동시에 혼합해 연소한다. 복합형 버너는 단순히 연료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연료별로 완전히 다른 연소 특성을 하나의 장치에서 구현해야 하는 기술적 어려움이 있어 주로 산업 플랜트의 운영 효율성 측면에서 사용된다.

듀얼-퓨얼 버너(Dual-Fuel Burner)는 가장 일반적인 형태로, 주로 가스와 오일을 모두 사용할 수 있는 버너다. 멀티-퓨얼 버너(Multi-Fuel Burner)는 듀얼-퓨얼 버너를 넘어 고체 분말 연료(목재 분진, 석탄 분진 등)까지 겸용할 수 있다.

나) (B) 기계식 스토커(stoker)·기계식 불판·기계식 회(ash) 배출기와 이와 유사한 기기 그룹

'(B) 기계식 스토커(stoker)·기계식 불판·기계식 회(ash) 배출기와 이와 유사한 기기 그룹'의 기기는 노에 고체연료를 공급하거나 화상(火床)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의 기계장치다. 이들 기기는 연료를 기계적으로 이송·교반·연소·배출시키는 오래된 기기들로 화력발전소에서는 분무식 버너에 주류 자리를 내줬지만, 특히 수분이 많고 이물질이 많은 바이오매스나 생활 폐기물을 처리하는 소각로에서 여전히 널리 사용된다. 이들 기기는 별개의 장치가 아니라, 하나의 통합된 시스템으로 설계돼 함께 작동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어떤 경우는 기계장치나 자동장치가 비기계식의 장치와 결합돼 있는 것도 있다.

(1) 기계식 스토커(stoker)는 여러 가지의 형태가 있으나 고전적으로 아르키메데스(Archimedean)형 스크루(screw)식·기계형 셔블(mechanical shovel)식·슬라이딩 트레이(sliding tray)식·피스톤(piston)식 등의 여러 가지의 공급장치와 함께 결합된 석탄 호퍼(hopper)로 구성되며 이들은 수동이나 자동으로 석탄의 공급량을 조절하고 석탄을 화상(火床)에 공급한다. 이러한 장치에는 때로는 균일한 크기의 석탄을 공급시키기 위한 분쇄기가 설치된 것도 있다. 이 호에는 중앙난방식 보일러(가정용의 것을 포함한다)용의 기계식 스토커(stoker)를 포함한다.

이들 형태는 다음과 같다.

아르키메데스 나사식 스토커 (Archimedes Screw Stoker)	증기 기관차 등에 사용된 가장 대표적인 방식으로 경사진 관 안에 큰 나사(오거, Auger)가 있어 회전하면서 석탄을 밀어 올려 화실로 공급함.
스크루 스토커 (Screw Stoker)	아르키메데스 나사식과 동일한 원리로, 나선형 날개를 회전시켜 연료를 이송하며 소형 보일러나 산업용 로에서 많이 사용했음.
기계식 삽 스토커 (Mechanical Shovel Stoker)	사람이 삽으로 던지는 동작을 기계적으로 모방한 방식으로 기계식 팔이나 체인에 달린 삽이 연료를 집어 불판 위로 뿌려준다. 비교적 간단한 구조로 소형 보일러에 적합했음.

슬라이딩 트레이 스토커 (Sliding Tray Stoker)	연료를 담은 트레이가 왕복 운동하며 연료를 불판 위로 밀어내는 방식으로 트레이의 움직임으로 연료가 고르게 퍼지고, 연소 공기 공급도 용이함.
피스톤형 스토커 (Piston Type Stoker)	피스톤의 왕복 운동을 이용해 연료를 밀어 넣는 방식으로 비교적 정밀한 연료량 조절이 가능해 특수 산업용 보일러에 사용됨.

(2) 기계식 불판(grate)은 석탄을 화상 위에 살포하고 균일한 연소를 유지하기 위해 석탄이 앞으로 옮겨지도록 설계된 기기로서 여러 가지 형식의 것이 있다. 가장 일반적인 형은 캐터필러 밴드(caterpillar band)의 원리를 이용한 것과 경사요동단식(oscillating inclined step)이 있다. 이들 불판에는 슬랙이나 회(ash)를 배출하는 장치가 부속된 경우가 있고 분리된 기계장치에 의해 배출되는 것도 있으나 이들 또한 이 호로 분류한다.

경사왕복식 불판(Inclined Reciprocating Grate)은 1970년대 폐기물 소각로용으로 사용된 고전적인 기계식 불판으로, 소각로에서 계단 모양의 경사진 불판이 왕복 운동하며 연료를 아래로 이송한다.

회전식 불판(Rotating Grate)은 원형으로 회전하는 불판 위에 연료를 올려놓고 연소시키는 방식으로, 소형 바이오매스 난방용 보일러에 많이 사용된다.

이동식 불판(Traveling/Chain Grate)은 무한궤도처럼 움직이는 체인에 불판 바(Grate bar)를 연결해 연료를 이송하는 방식으로 바이오매스 보일러에 많이 사용된다.

고정/가동 복합식 불판(Fixed/Movable Grate)은 고정된 불판 바와 움직이는 불판 바를 교차 배치해 연료를 교반하고 이송하는 현대적인 방식으로 폐기물 소각로에 많이 사용된다.

다) 부분품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 따라 제8416호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는 부분품은 이 호로 분류하며 주요 부분품과 역할은 다음과 같다.

구성 요소	주요 부품	역할
연료 공급부	추력 피스톤(Thrust Piston)	석탄·연료를 연소실 쪽으로 밀어 넣음
	트레이(Tray)	피스톤 밑에서 연료가 이동하는 받침대 판
연소실 불판(불판) 구동부	섀시(Chassis)	불판 전체를 받치는 하부 강철 프레임
	가이드&롤(Guides&Rolls)	체인 마디가 탈선하지 않고 부드럽게 구르도록 유도

구성 요소	주요 부품	역할
	링크 섹션&링크 (Link Sections&Links)	캐터필러처럼 연결돼 연료를 싣고 이동하는 불판 마디
연소 제어	버너 노즐(Burner Nozzle)	미세 미화 분사로 불꽃 형성을 제어

이 호로 분류되는 주요한 기기로는 중유연료 버너, 가스연료 버너, 미분탄연료 버너(Pulverised Coal Burnet), 가스-액체연료 복합형 버너, 기계식 스토커, 기계식 불판(grate) 등이 있다.

2) 제8416호의 다양한 기기

중유연료 버너(분무기)	다양한 중유연료 버너	액체연료 버너
		
멀티 액체연료 버너	**미분탄연료 버너**	**바이오가스연료 버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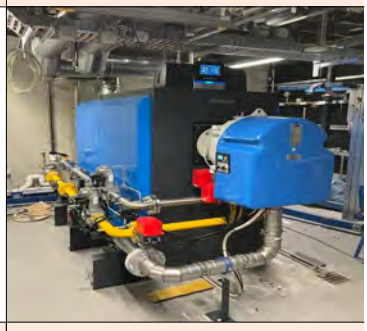
멀티 가스연료 버너	**천연가스연료 버너**	**가스-오일연료 복합형 버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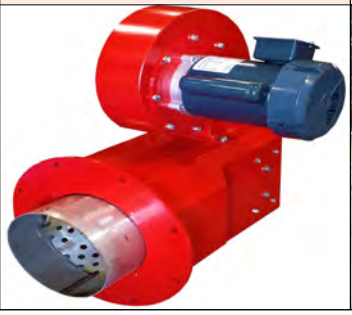	

기계식 스토커	기계식 불판	바이오매스 기계식 불판
		

주요 부분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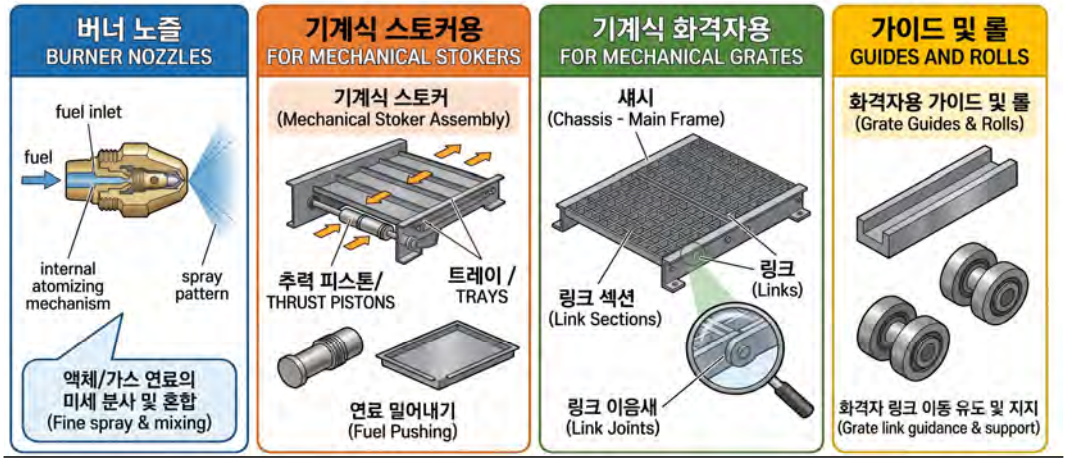

3) 제8416 소호의 구성

제8416 소호는 호의 용어에 따른 그룹과 사용 연료의 종류를 감안해 3개의 소호로 세분화하고, 부분품을 소호로 규정한 총 4개의 소호로 구성돼 있다.

소호의 용어를 풀어 해석하면 다음과 같다.

- 제8416.10호: 액체연료를 사용하는 노(爐)용 버너
- 제8416.20호: 그 밖의 노(爐)용 버너[콤비네이션 버너(combination burner)를 포함한다]
- 제8416.30호: 기계식 스토커(stoker)[이들의 기계식 불판·기계식 회(灰) 배출기와 이와 유사한 기기를 포함한다]
- 제8416.90호: 부분품

4) 제8416호 HSK의 구성

제8416.10 소호의 경우 연료소비량(ℓ)을 기준으로 3개로 세분화했으며, 제8416.20 소호의 경우 사용 연료의 종류를 기준으로 3개로 세분화했다. 제8416.20 소호는 연료의 종류에 따라 협정세율에 차이가 있으며 복합형 버너(Combination Burners)는 HSK 제8416.20-9000호(기타)로 분류된다. 제8416.90호(부분품)는 간단히 그룹에 따른 부분품을 구별해 2개로 세분화했다.

4. 관련 규정

제8416호의 '액체연료·잘게 부순 고체연료·기체연료를 사용하는 노(爐)용 버너, 기계식 스토커(stoker)[이들의 기계식 불판·기계식 회(灰) 배출기와 이와 유사한 기기를 포함한다]'를 분류하기 위한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다.

■ **제16부 주 제2호**

기계의 부분품(제8484호·제8544호·제8545호·제8546호·제8547호의 물품의 부분품은 제외한다)은 이 부의 주 제1호, 제84류의 주 제1호, 제85류의 주 제1호에 규정한 것 외에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한다.

··· <중략> ···

나.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로 분류한다.

■ **제84류 주 제2호**

제16부의 주 제3호나 이 류의 주 제11호에 따라 적용될 호가 정하여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8401호부터 제8424호까지와 제8486호의 하나 이상의 호에 해당하는 기기가 동시에 제8425호부터 제8480호까지의 하나 이상의 호에도 해당되는 경우, 이 기기는 제8401호부터 제8424호까지의 적합한 호로 분류하거나 경우에 따라 제8486호로 분류하고, 제8425호부터 제8480호까지에는 분류하지 않는다.

■ **제7321호의 용어**

철강으로 만든 스토브(stove)·레인지(range)·불판·조리기(중앙난방용 보조보일러를 갖춘 것을 포함한다)·바비큐(barbecue)·화로·가스풍로·가열판과 이와 유사한 비전기식 가정용 기구와 이들의 부분품

■ **제7322호의 용어**

철강으로 만든 방열기(중앙난방용으로 한정하고, 전기가열식은 제외한다)와 이들의 부분품, 동력구동식 송풍기를 갖춘 공기가열기와 온풍배분기(냉풍이나 조절된 공기를 공급할 수 있는 배분기를 포함하고, 전기가열식은 제외한다)와 이들의 부분품

■ **제7326호의 용어**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

■ **제8402호의 용어**
증기발생보일러 ··· <중략> ··· 와 과열수보일러(super-heated water boiler)

■ **제8403호의 용어**
중앙난방용 보일러(제8402호의 것은 제외한다)

■ **제8404호의 용어**
제8402호나 제8403호의 보일러용 부속기기(예: 연료절약기·과열기·그을음제거기·가스회수기)와 증기원동기용 응축기

■ **제8424호의 용어**
액체나 가루의 분사용·살포용·분무용 기기(수동식인지에 상관없다) ··· <후략>

■ **제8428호의 용어**
그 밖의 권양(捲揚)용·취급용·적하용·양하용 기계류 ··· <후략>

■ **제8474호의 용어**
선별기·기계식 체·분리기·세척기·파쇄기·분쇄기·혼합기 ··· <후략>

5. 주요 쟁점사항

제8416호의 분류와 관련해 주요 쟁점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잘게 부순(Pulverised) 고체연료의 개념
2) (B) 그룹의 기기가 사용되는 산업 분야와 경합 가능한 세번
3) 제8416호에서 제외되는 부분품의 분류
4) 제8416호의 바람직한 범주 해석
5) 그 밖에 제8416호와 경합하는 물품과 세번

1) 잘게 부순(Pulverised) 고체연료의 개념

제8416호의 용어에 '잘게 부순(Pulverised)' 고체연료를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잘게 부순 것의 개념을 파악해야 제8416호의 범주를 이해할 수 있다.

제8416호에서 '잘게 부순 고체연료(Pulverised Solid Fuel)'는 단순한 덩어리 숯이나 알갱이 형태(Pellet)가 아니라, '공기 중에 띄워 액체/가스처럼 분사해 태울 수 있을 정도의 미세한 분말(가루)' 상태를 의미한다. 해설서에서 예시하고 있는 '(2) 미분탄버너'의 연료로 사용하는 가루탄(Pulverised Coal)의 입자 크기는 통상 75㎛(마이크로미터, 0.075mm) 이하가 전체의 70~80% 이상을 차지한다고 한다. 사람의 머리카락 두께(약 50~100㎛)와 같거나 더 가느다란 수준의 아주 고운 가루의 형태다.

고체연료라도 이렇게 고운 가루로 만들면, 1차 공기(Primary air)와 섞어서 노즐을 통해 연소실로 '분사(Spray)'할 수 있다. 즉, 덩어리 상태로 바닥에 두고 태우는 것이 아니라, 가스나 기름처럼 '버너(Burner)를 통해 불꽃을 직접 분사'해 공중에서 연소시키기 때문에 '잘게 부순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버너'가 액체연료, 기체연료를 사용하는 노용 버너와 같은 호에 분류되는 것이다.

2) (B) 그룹의 기기가 사용되는 산업 분야와 경합 가능 세번

제8416호의 '(B) 기계식 스토커(stoker)·기계식 불판·기계식 회(灰) 배출기와 이와 유사한 기기'에 대해 해설서에서는 석탄을 노에 공급하기 위한 기계장치로 설명하고 있다.

기계식 스토커(stoker)·기계식 불판·기계식 회(灰) 배출기기의 과거 발명사를 찾아보면 증기기관차 등에 석탄을 기계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개발된 기기이며, 미분탄버너(Pulverised Coal Burner)에서 설명한 대로 미분탄은 가스나 기름처럼 버너(Burner)를 통해 불꽃을 직접 분사할 만큼 미세가루의 형태이므로 더 이상 미분탄버너에는 이들 기기가 사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들 기기는 현재 크기가 있는 덩어리 형태의 연료를 태우는 산업에 여전히 사용된다. 대표적인 산업으로 바이오매스(Biomass) 발전 및 산업용 보일러에 우드칩(Woodchips), 우드펠릿(Wood pellets), 바이오 고형연료(PKS, Palm Kernel Shell, 조개껍데기·야자껍질) 등의 연료를 공급하기 위해 사용된다. 즉, 기계식 스토커가 밀어 넣어 불판(불판) 위에 깔아두고, 불판을 이동시키며 지속해서 태운다.

또한 가정용 쓰레기, 산업폐기물, 고형연료(SRF, Solid Refuse Fuel)를 도시폐기물 및 산업폐기물 소각장(Incineration Plant)에 연료로 공급할 때도 여전히 유용하게 사용된다. 즉, 규격이 불규칙한 폐기물은 미분화할 수 없으므로 스토커 방식의 불판 소각로(Grate-type Incinerator)가 가장 보편적으로 쓰인다.

대형 화력발전소는 현재 미분탄버너를 쓰지만, 중소형 공장의 석탄 보일러는 미분탄 설비(분쇄기 등)의 비용 부담 때문에 여전히 조 탄(덩어리 석탄)을 기계식 스토커와 불판을 이용해 태우는 설비를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

소각로나 바이오매스 산업에 쓰이는 불판은 소각로(제8417호)나 보일러(제8402호)의 부분품과 경합이 될 수 있다.

관세율표상 제8416호는 단순히 '버너'만 분류하는 호가 아니라, 연료를 공급하고 연소시키는 '열원 공급 구동 장치(Combustion Appliance)' 전체를 통합 분류하는 개념의 호다. 이와 관련된 세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8416호	연료를 밀어 넣고, 태우고, 재를 털어내는 '연소 및 구동 매커니즘' (버너, 기계식 스토커, 불판 등)
제8402호	그 열로 물을 끓여 증기를 만드는 '증기발생 보일러'
제8417호	그 열로 물건을 굽거나 쓰레기를 태우는 '산업용 노/소각로의 구조물 본체'

따라서 바이오매스 보일러나 폐기물 소각로 내부에서 "연료를 이동시키며 연소시키는 기계장치 부품(기계식 스토커, 불판, 새시 등)"이 별도로 제시될 때는 제8416호로 분류된다. 다만, 이들 보일러나 소각로와 같이 제시될 때는 제16부 주 제4호(기능단위기계분류규정)를 적용해 제8402호나 제8417호로 분류할 수 있다.

3) 제8416호에서 제외되는 부분품의 분류

관세율표 제8416호 (B) 그룹의 호의 용어는 'mechanical stokers, including their mechanical grates, mechanical ash dischargers and similar appliances'이다.

여기서 호의 용어에 'Mechanical'은 '기계식의 또는 기계로 작동되는'으로 번역된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Mechanical'은 단순히 '금속으로 만든 기계 부품'이라는 뜻이 아니라, '외부 동력이나 구동 기획(Mechanism)을 통해 스스로 연동·작동하는 기계장치'로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공업용이나 그 밖의 것으로서 비 기계식(non-mechanical)의 불판 봉이나 불판은 제8416호로 분류할 수 없다. 예를 들어 특수한 형의 보일러의 전용 부분품으로 설계된 금속으로 만든 불판으로 구성되는 노통(fire-box)은 제8416호로 분류하지 않고 보일러의 부분품으로 봐 제8402호로 분류하고 중앙난방용 보일러의 것은 제8403호로 분류한다.

동일한 개념으로 가스 발생기에 전용으로 사용되는 비기계식(non-mechanical)의 불판은 제8416호로 분류하지 않고 가스발생기의 부분품으로 봐 제8405호로 분류한다.

반면에 철로 만든 범용성의 불판 봉(fire-bar)과 불판(grate)은 그 형태에 따라 제7321호(철강으로 만든 난로용 불판)·제7322호(중앙난방용 기기의 부분품인 불판)나 제7326호(벽돌을 쌓아 만든 일반구조물이나 산업용 고정 구조물 들에 범용으로 쓰이는 철제의 화막 및 불판)로 각각 분류하며, 관련 이미지는 다음과 같다.



4) 제8416호의 바람직한 범주 해석

제8416호의 용어는 '액체연료용·분쇄한 고체연료용 또는 가스용 노(爐)용 버너, 기계식 스토커(이들의 기계식 불판·기계식 재 배출기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을 포함한다)'다.

호의 범주는 통상적으로 같은 호 해설서 전문에 표현하고 있는데 제8416호 해설서 전문에 "이 호에는 모든 종류의 노(爐)에 대한 기계식 또는 자동식 착화·연료 공급 장치와 재 및 연소 잔재물을 배출하기 위한 일련의 장치들을 분류한다"라고 해설하고 있다.

언뜻 보기에도 호의 용어와 해설서 전문에서 설명하고 있는 범주가 서로 다르므로 그 이유를 살펴보면,

호(Heading)의 용어에 '버너, 스토커, 불판, 재 배출기'라는 각각의 개별 기기 명칭을 나열(Enumeration)하고 있는데, 해설서 전문은 이 기기들을 개별적으로 나열하는 대신, 이들이 수행하는 '역할(기능)'을 포괄적으로 묶어서 표현했다.

이에 대해 필자의 견해로 제8401호 내지 제8424호까지는 기능별 분류체계이므로 개별기기의 명칭으로 나열된 것을 '버너 기능, 기계적 스토커 기능'으로 해석하면 좀 더 해설서 전문에 가까워진다. 즉, 버너(Burners)→연료를 불붙여 쏘아주는 장치(Firing), 스토커 및 불판(Stokers& Grates)→연료를 노 내부로 공급·이동시키는 장치(Stoking), 재 배출기(Ash dischargers)→재를 밖으로 빼내는 장치(Evacuating ash)로 연계해 볼 수 있다. 쉽게 말하자면, 해설서의 전문은 Firing이라는 단어 속에 버너(Burner)의 기능을 포함해 표현한 것이다.

제8416호의 용어에 'Furnace burners(노용 버너)'라고 해서 버너 앞에만 'Furnace'를 붙였지

만, 해설서에서는 'furnaces of all kinds(모든 종류의 노)'라고 표현해 스토커와 재 배출기까지 모두 노(Furnace)에 부착되는 장치임을 명시했다.

그 이유는 HS 해설서에서 말하는 Furnace(노)는 굉장히 넓은 개념으로, 보일러(Boiler), 소각로(Incinerator), 산업용 가열로(Kiln/Oven) 등 '연소가 일어나는 모든 공간'을 통칭한다. 따라서 해설서에서는 해당 장치들이 설치되는 범주(Furnaces of all kinds)를 포괄적으로 정의해 준 것이다.

결론적으로 요약하자면 제8416호에 열거한 기계 명을 '기능'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며, 호의 용어를 좀 더 광범위하게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5) 제8416호와 경합하는 물품과 세번

제8404호의 용어에 '제8402호나 제8403호의 보일러용 부속기기(예: 연료절약기·과열기·그을음제거기·가스회수기)와 증기원동기용 응축기'를 규정하고 있다. 제8416호의 버너는 보일러의 필수적인 부속기기지만 "노(furnace)용 버너·기계식 불판과 메커니컬 스토커(mechanical stoker)와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계"가 별도로 제시되는 경우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 따라 제8416호로 우선 분류한다.

제8424호의 용어에 '액체나 가루의 분사용·살포용·분무용 기기(수동식인지에 상관없다)'를 규정하고 있다. 노용 버너는 액체연료와 잘게 부순 고체연료를 분사, 분무하는 기능을 수행하나 제8424호로 분류하지 않고 제8416호로 분류한다. 제8424호나 제8416호는 분류의 우선순위는 없으나 제8416호가 제8424호보다 호의 용어가 구체적으로 열거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제8428호의 용어에 '그 밖의 권양용·취급용·적하용·양하용 기계류'를 규정하고 있다. 기계식 스토커(stoker)·기계식 불판(grate)과 이와 유사한 장치는 이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한다. 이 경우 제84류 주 제2호 규정에 따라 제8416호가 제8428호에 우선해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8416호로 우선 분류한다.

제8474호의 용어에 '선별기·기계식 체·분리기·세척기·파쇄기·분쇄기·혼합기'를 규정하고 있다. 가루 상태 연료용 버너에 메커니컬 스토커(mechanical stoker)로서 분쇄장치(pulverising or grinding equipment)를 갖춘 것은 제8474호와 경합이 될 수 있으나 이 역시 제84류 주 제2호 규정에 따라 제8416호로 분류한다.

■ 고체연료 정량공급장치의 분류 사례

시행일자	2005년 8월 4일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 세번	제8416.30-0000호
품명	Proportioning Rotor Weighfeeder
물품 설명	ㅇ 기능 및 용도 시멘트 소성 공정에서 소성로에 미분탄, 갈탄, 코크스 등과 같은 분쇄된 형태의 연료를 주입하기 위한 정량공급장치 ㅇ 구조 및 형태 연료주입부, 섹션화된 회전 Rotor, Rotor 구동 Motor, 토출용 공기주입라인, 토출 Outlet부, Control Computer System 등으로 구성 ㅇ 작동 원리 소성로의 연소연료 공급시스템은 크게 주 미분탄 저장 빈(Main Coal PC Bin), 계량 Bin, 로터식 정량공급기(Rotor Weighfeeder Burner), 송풍기(Blower)로 구성이 되는 바, Rotor Weighfeeder는 계량 Bin과 Burner 사이에 설치돼 계량 Bin으로부터 분쇄된 각종 연료를 회전하는 Rotor의 각각의 섹션으로 공급받아 이를 버너로 연결된 공압 이송라인(Pneumatic Conveying Line)으로 정량제어 돼 일정한 분량으로 Burner로 공급함.
결정 사유	제8416호에는 '기계식 스토커(Stoker)'가 분류되며, 제8416호 해설서에서 "이들은 노에 고체연료를 공급하는 기계장치이다"라고 해설하고 있는 바, 본 물품은 시멘트 소성 공정에서 소성로에 미분탄, 갈탄, 코크스 등과 같은 고체연료를 주입하기 위한 정량공급장치로 상기 해설서에 부합하는 물품이므로 HSK 제8416.30-0000호에 분류함.

전통약재 나한과(羅漢果) 분말의 HS Code

이 영 주 | 중앙관세분석소

나한과(羅漢果, Siraitia grosvenorii)는 중국의 유명한 약재 중 하나로 '불로장생의 약', '신비의 과일'이라고 불렸다. 폐에 열기가 많아 기침을 하거나 목이 아파서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 때 폐를 정화하고 부드럽게 해줘 기침을 멈추게 해준다. 또한 장 기능을 조절하는 효능도 있어 변비에 효과적이다.

설탕을 대체하는 감미료로서의 측면도 각광받고 있다. 나한과의 주요 성분중 하나인 '모그로사이드(mogroside)'는 스테비오사이드처럼 글리코사이드 결합으로 구성된 배당체이고 설탕보다 200~300배가량 더 달다고 한다. 또한 체내에 흡수되지 않고 배출된다. 이러한 점들로 인해 일부 제로 칼로리 음료에도 들어간다.

이번 호에서는 나한과(羅漢果)에 대한 품목분류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세번 정정 이유] 본 물품은 나한과 껍질을 제거한 후 건조·분쇄한 파쇄상을 포장한 것으로 침출차 제조용으로 사용한다. '건조한 채두류(菜豆類)(제0713호의 것), 사고(sago)·뿌리나 괴경(塊莖)(제0714호의 것), 제8류 물품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가루'에 해당하는 제1106.30-0000호로 신고했다.

제1106호 해설서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 ■ **제1106호 해설서**
> **(C) 제8류 해당 물품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가루**
> 고운 가루·거친 가루·가루를 만드는데 쓰이는 **제8류의 주요한 과실과 견과류에는 밤·아몬드·대추·야자·바나나·코코넛과 타마린드 열매** 등이 있다.
> 또한 이 호에는 과실 껍질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가루도 분류한다.

따라서, 제8류를 살펴보면, "이 류에는 일반적으로 **식용(제시하는 상태 그대로 이거나 가공 후)에 공하여지는 과실**·견과류와 감귤류나 멜론(수박을 포함한다)의 껍질을 분류한다. 이들은 신선(냉장한 것을 포함한다), 냉동(물에 삶거나 쪄서 사전에 조리한 것인지, 감미료를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나 건조한(탈수·증발이나 동결건조한 것을 포함한다) 경우라도 이 류에 분류하며 … <중략> … 이 류의 과실과 견과류는 원래 상태의 것·얇게 썬 것·잘게 썬 것·채를 썬 것·씨를 제거한 것·**펄프 상태의 것·부스러진 것**·껍데기나 껍질을 벗긴 것일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또한 다른 류에 열거된 몇몇 식물성 물품은 **식물학 상으로는 과실이라 할지라도 이 류에서 제외**한다”라고 설명하면서, “(c) 땅콩과 그 밖의 채유용 열매·**주로 의료용으로 사용하는 열매**·로커스트콩·살구와 이와 유사한 과실의 핵(제12류)”을 예시로 들었다.

주로 의료용으로 사용하는 열매의 경우는 제12류로 분류돼 이 류에서 제외됐다. 나한과(羅漢果)는 예로부터 중국에서 자라는 유명한 약재로서, 기침, 가래, 기관지 염증 완화 등에 뛰어난 효능을 가진 전통약재에 해당한다.

관세율표 제1211호에는 ‘주로 향료용·의료용·살충용·살균용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적합한 식물과 그 부분(종자와 과실을 포함하고, 신선한 것·냉장한 것·냉동한 것·건조한 것에 한정하며, 절단하거나 잘게 부순 것인지 또는 가루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다)’을 분류한다.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주로 향료용·의료용·의약용·살충용·살균용·구충용이나 이와 유사한 목적에 사용하는 종류의 식물성 생산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이 호에 해당하는 어떤 식물이나 식물의 부분(종자나 과실포함)은 식물성 침출액이나 식물성 ‘차(tea)’ 제조용으로 조합된 것일 수도 있다. 단일한 종의 식물이나 식물의 부분(종자나 과실을 포함한다)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러한 물품[예: 페퍼민트 ‘차(tea)’]은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본 물품은 나한과를 건조·분쇄한 것으로서 주로 의료용 및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용도(약재, 침출차)에 적합한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1211.90-1999호에 정정 분류했다.

신고품명	신고세번(세율)	회보품명	정정세번(세율)
POWDER OF FRUITS	제1106.30-0000호 (FCN1 1.6%)	Other plants and parts of plants, of kind used primarily in pharmacy, dried	제1211.90-1999호 (FCN1 8%)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신간 도서안내

2026 개정판
관세법령집



- **관세 행정 실무역량 강화를 위한 수록 법령 개편**
  「행정기본법」·「행정절차법」등 신규 수록
- **2026년 4월 1일까지 최신 개정 법령 반영**
  최신 법조문과 관련 고시·판례 통합 업데이트
- **법령 구조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법 · 시행령 · 시행규칙 3단 구성**

2026 HS품목별
수출입통관편람

관세 · 무역 실무를 위한 가장 확실한 기준



- **2026년 관세·통계 통합품목분류표 및 FTA 연차세율 반영**
  - 22개 FTA(CEPA, SECA 포함), WTO 협정 등 반영
  - 한·UAE CEPA, 한·에콰도르 SECA 신규 수록
  - 한·EU, 한·영국 FTA 상·하반기 세율 반영
-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및 간이정액환급률표 개정사항 수록**
- **통합공고 및 기타세율 규정, 내국세법 등 주요 개정사항 반영**

도서 구매 문의 안내

구매처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smartstore.naver.com/kctdi

※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더욱 다양한 도서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문의처 TEL (02)3416-5112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지식사업실

휴대전화 카메라로 스캔하시면
도서 판매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한국관세무역개발원
Korea Customs and Trade Development Institute